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<u>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</u>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_____ <u>강서구</u>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<u>새마을운동 강서구 지회와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, 새마을문고 강서구지부, 강서구 새마을부녀회</u>를 말한다.</p> <p>2.~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_____ _____ 1. _____ <u>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지회와</u> --- _____ _____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<u>1회에</u> 한하여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지도자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	<p>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<u>1회(2분기분)에</u> _____ _____ _____ _____</p>
<p>제11조(장학기금 확보)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<u>편성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장학기금 확보) ----- _____ _____ <u>편성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